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10. 20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9. 10. 06
- 다. 위원회회부 : 2009. 10. 07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교통안전법」이 개정(2006. 12. 28 법률 제8121호)되고 200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내용에 맞춰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나. 위원회 명칭 “서울특별시마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1조)
- 다. 마포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명시 (안 제2조)
- 라. 위원회 구성(20명 이내) 및 위원의 임기(3년)를 규정 (안 제3조 제6조)
- 마.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1) 개정문안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07.30 ~ 08.19)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개정전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법령 내용에 맞춰 수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검토결과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8조 제1항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에서 “이상”을 삭제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1회만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임시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안
<p>제1조~제7조 “생 략”</p> <p>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고, <u>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u> <u>개최하고</u>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조~제7조 “원안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 ----- -----<u>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u> <u>최하고</u>----- -----</p> <p>② “원안과 같음”</p>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①국토해양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확정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